



작업 신청서 (승인) (NineTree Convention)

* 컨벤션운영팀: 2158-9020
(화물엘레베이터, 유압 사다리 등)
* 시설부: 2158-9050

| | | | | |
|---|---|---|----------|---------------|
| 시 공 업 체 | 업 체 명 | CELLULAR PHONE: | | |
| | 대 표 자 | 현장 책임자: | | |
| | 장 소 | 작업 인원: | | |
| | 작업 기간 | 작업 시간: | | |
| | 작업 내용 | | | |
| | 반입 품목 | | | |
| | 행 사 명 | 행사 날짜: | | |
| | *상기와 같이 작업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업 체 명 | 20 년 월 일 | | |
| | 대 표 자 | 서 명: | | |
| 감 독 부 서 | [발주부서] 세일즈&마케팅 | 컨벤션운영팀 | 시설부 | |
| | 담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 |
| | 지 시 사 항 (별첨#1 참조) | | | 확인 서명란 |
| | 위 험 물 | * 각종 유류품 및 화약 반입 금지 한다. | | |
| | | * 고, 소 작업시 그랑서울 방제센터에서 교육 득한후 작업 한다. | | |
| | | * 오일 스모그 머신 사용 금지 (컨벤션 천정 기름때 방지)한다. | | |
| | 외 부 업 체 | * 무선 마이크 반입 사용시! 주파수를 메모, 음향실로 제출한다. | | |
| | | * 기획사는 방송,언론 카메라 기자들 출입 발견시! 컨벤션 담당 지배인 또는 음향실로 연락, 무선주파수 가변사용으로 혼선을 사전 예방 한다. | | |
| | | * 컨벤션측 음향,영상,조명 장비에 연결 사용시 컨벤션장비 점검후 사용하고 컨벤션장비 문제로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 |
| | | 1)조명장비 일체를 반입 설치 사용한다,컨벤션측은 전력 최대 100kw범위 내 제공한다. | | |
| 2)컨벤션측 Dimmer CPU System 보호로 신호선 제공 금지 한다. | | | | |
| 3)로핀,"맥, 기획사 지참한다, 컨벤션측Par light 병행 사용 가능함. | | | | |
| 유압사다리 | * 컨벤션운영팀에 신분증 제시,KEY 인수, 3F 유압사다리 보관중 "사용법숙지, 사용후 반드시 제자리 원위치 하고 KEY 반납 한다. | | | |
| 각 서 | *상기 본인은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귀사에서 지시하는 제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여하한 사고도 발생치 않음은 물론,만약의 사고를 유발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 할것을 서약 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 시 공 사 : | 서 명: | | |
| 소 속 : | | | | |
| 대 표 자 : | | | | |
| 주 의 사 항 | 1.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절대 금연 할 것. | | | |
| | 2.행사용 부스나 목공 작업 시 바닥 보양 재 을 설치 후 반드시 작업 할 것. | | | |
| | 3.PAINT 작업시 화기 통제 및 안전수칙에 의거 시행 할 것. | | | |
| | 4.용접작업시 불티확산,확인파 가연물질 제거후 시행 할 것. | | | |
| | 5.옥내 반입 위험물은 당일 사용량만 반입 할 것. | | | |
| | 6.작업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재 통제를 받고 작업에 임할 것. | | | |
| | 7.작업 1일전까지, 작업 신청서를 제출할 것. | | | |
| | 8.대행사 현수막(특히 통천 배너) 설치 후 반드시 철거 후 자재는 전부 가져 갈 것. | | | |
| | 9.행사전,후 담당자와 이상 유무 확인을 필히 시행할 것 | | | |
| | 10.미리 준비된 행사 물품은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보안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 | | | |
| | 11.행사 후 작업에 따른 쓰레기는 직접 처리 혹은 반출 할 것. | | | |

❖ 별첨 1

[위험물]

- 1-1. 각종 유류품 및 화약/화염/화기류의 원천 반입, 사용을 금지한다.
- 1-2. 행사 연출에 관련된 물/불(화염)류의 사용은 이를 수반하는 안전대책 장비구비와 인원의 배치를 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주최측이 진다.
2. 오일 포그머신 사용 금지.(프로젝터 센서 점막형성 및 천정 점막발생 방지)
3. 드라이아이스/디퓨저/헤이저/포그 사용 시 영상투사 등의 협의 거쳐야하며 위 명기된 이펙터 외의 반입물품도 전량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창/칼/무기류는 모조품일 경우에도 반드시 컨벤션측과 협의 후 반입하며 무기류의 반입은 원천금지 한다.
5. 위험물로 명명, 혹은 컨벤션측에서의 위험물로 간주한 품목의 사전허락을 득한 후 사용 시엔 반드시 사고대책 인원을 배정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반입 장비운영 및 업체 준수 사항]

0. 행사 내용의 변화가 시나리오대로 적용되어 수시로 규가 변경되는 행사 일체는 전문인력의 대동이되어 운영조작하며, 이에 대한 리허설/행사 내용에는 일체 컨벤션측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1. 이용자는 외부장비 반입리스트 및 작업인원을 작업/행사일 최소 영업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음향설비 및 조명 설비의 일부 이용은 전일/후일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병행운동을 허하나 이는 음향실장 및 실장이 명명하는 대리 책임근무자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만 가능하며, 이에 준하지 않을 시 일체 사용이 불가하다. 이는 사용미숙과 손망실의 진위여부에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3. 무선마이크 반입 및 기자회견 등의 주파수는 900MHz대역을 피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주파 혼선 등의 환경요인에 적용받는 오디오의 질적저하 현상은 컨벤션측에서의 해결사항이 아니며 직접제어가 가능한 RF 엔지니어등의 대동은 주최측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4. 부속류/기타 컨벤션 시설의 일부 응급지원 희망 시에는 반드시 음향실장(및 대리 책임근무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손망실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1:1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무단사용을 금한다.
(위반 시 10배 배상)
5. 컨벤션 장비 사용 시 문제해결은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제기치 아니한다.
6. 고정된 장비 이용 시 상기와 동일한 체계의 허락을 득하되, 고정적인 컨벤션 운용 최소분의 고정장치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외의 사용장비는 반드시 작업 전 원상복귀를 기본으로 한다.
- 6-2. 원상복귀라 함은 작업자가 정의 내릴 수 없으며, 작업 전의 상태나 명일 작업에 유용한 최소한의 위치 음향실장과 협의 후 복귀한다.
7. 컨벤션의 조명 시설은 무대를 비추는 작업의 최소한의 PAR64 소량분만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효 연출을 위한 조명기기(LED SPOT/MOVING SPOT/FOLLOW SPOT/ELLIP/FRESNEL/SCOOP)등은 사회로와 운영협의(DMX케이블 배선 등) 후 반입사용 하여야 한다.
8. 컨벤션의 조명시설 사용 시 램프의 단락 등 소모제는 지참하여 필요 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 모든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 1인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큐시트 내용에 준하는 조작 운영을 위한 인원은 대동하여야 한다.
10. 만약 이를 준수하는 전문작업인원 대동 및 장비수급 반입 등이 원할치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운영책임은 컨벤션측은 일체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모든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에는 음향실에 통보하며, 사용된 장비와 물품의 상태는 양측이 동일 배석한 상태에서 육안 및 조작운영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후 철수하며 만약 이를 준수치 않을 시에 발생된 손망실 품목을 해당작업자가 전량 배상 책임을 진다.

[유압사다리 및 기타 공구/장비 사용에 관한 가이드]

1. 사다리 운영 시 1인의 고소 작업자 외 보조작업자 1인 이상이 운영하여야 한다.
2. 음향실을 통하여 반드시 허락을 받고 해당 조작기를 인수받고 작업종료 시 반드시 음향실 근무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일반 사다리 및 공구류의 사용 시 무단사용을 금하며, 사용 후 직접 반납을 기본으로 한다.
(공간 무대팀 포함)
4. 조정실 이용 시 상주근무자의 출입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해당 기기 조작 시 반드시 안전수칙과 기본운영 조작 수준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관련 자격증 및 소속/직급)
6. 5항을 준수치 아니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주최측이 진다.
7. 조정실 이용 시 음식물 반입을 금하며, 특히 조작콘솔 앞에서의 액체류 거치는 절대 금한다.
8. 모든 작업자는 작업 시에 음주 및 실내흡연, 난동, 안전수칙 불이행에 따른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9. 기계바턴 조작부의 부득이한 조작 시 상주근무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변 정리와 타 작업 안전을 우선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확인 서명란 : _____